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생명공학육성법」이 개정(법률 제20475호, 2024. 10. 22. 공포, 2025. 4. 23. 시행)됨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수요조사, 지정요청 등 지정 절차, 지원 범위 및 내용, 변경 및 지정해제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, 생명공학기술의 수준 향상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, 사업화 촉진 지원, 전문인력 양성,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절차 신설(안 제12조의3)

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·연구,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학계·연구기관 등 기관의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요청방안 및 그 근거를 신설함

나.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원 내용 신설(안 제12조의4)

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, 실증,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, 확산·홍보 등 지원 범위 및 내용을 명확히 함

다.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및 해제 절차 신설(안 제12조의5)

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 요청방
안 및 그 근거를 신설함

라. 국제협력 추진 지원사항 추가(안 제12조의6)

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제 규제조화, 바이오
데이터 국제교류, 국제 전시회 및 학술회의 개최 지원 등 정부가 추진할
수 있는 법 제13조상의 사업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함

마.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항 추가(안 제12조의7)

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
위하여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명시함

바. 사업화 촉진 지원사항 추가(안 제13조의2)

생명공학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을 위하여 법 제15조에
따라 정부 지원이 필요한 내용으로서 예비창업자의 발굴·육성, 우수 아
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

사.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 지원사항 추가(안 제15조의5)

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표준 수요조사, 국제 표준화기구
대응, 협력 및 법 제20조의2에서 명시된 시책 추진에 관한 내용의 기관·
단체 위탁 근거 신설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 없음

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

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2조제1항”을 “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장에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3(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
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·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·단체·협회 등에 유망생명공학기술 지정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6조의 학계·연구기관·의료기관·산업계 등 다양한 혁신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정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
2. 지정요청 사유
3. 법 제11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과 관련된 자료

4. 해당 기술과 관련된 산업계·학계·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

5. 그 밖에 지정요청 기술과 관련된 참고자료

제12조의4(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원 범위 및 내용) ① 정부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유망 생명공학기술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개발 완료 후 사업화 촉진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 지원
2. 기술개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, 실증 및 인허가 지원
3. 공공부문에서 유망 기술의 초기시장 안착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
4.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, 기술평가, 기술거래 지원
5.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확산활동 및 대국민 홍보 지원
6. 기타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성공적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련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의5(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) ① 관계중앙행정기관

의 장 법 제16조의 학계·연구기관·의료기관·산업계 등 다양한 혁신주체는 진보된 기술의 출현,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보편화와 같은 기술환경의 변화 등 기존의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해당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범위와 내용
2. 변경 또는 해제 요청의 이유
3. 그 밖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요청에 관한 참고자료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협의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12조의6(국제협력의 추진)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생명공학에 관한 국가 간 규제조화 및 국제인증 지원

2. 생명공학 관련 데이터에 관한 교류 및 표준화, 상호운용성을 위한 협력

3. 기술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국제 전시회 및 학술회의 개최

4. 그 밖에 생명공학 수준 향상과 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12조의7(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) 법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생명공학 연구개발 및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

2. 의학적 전문지식과 생명공학을 융합한 전문인력 양성

3.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

제13조제1항 중 “법 제15조제7호”를 “법 제15조제1항제7호”로 한다.

제13조의2 및 제1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사업화 촉진에 대한 지원) 법 제15조제2항제3호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예비창업자의 발굴·육성

2.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또는 판로 개척 지원

3.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

4.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

5. 외국인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 전문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구

축 지원

6. 기타 생명공학 관련 사업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15조의5(표준화 사업 추진 등) ①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생명공학기술 국가표준을 위한 표준 수요조사
2. 표준화 전략 수립 및 국제 표준화기구 대응, 협력
3. 생명공학기술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·협력
4. 생명공학기술 관련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·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

② 정부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표준화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2026년 12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
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·연구
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·단체
·협회 등에 유망생명공학기술
지정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
뢰할 수 있다.

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
법 제16조의 학계·연구기관·
의료기관·산업계 등 다양한 혁
신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
장관에게 유망 생명공학기술의
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
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는
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
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
야 한다.

1. 지정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
용
2. 지정요청 사유
3. 법 제11조의2제2항 각호에
해당하는 요건과 관련된 자료
4. 해당 기술과 관련된 산업계
· 학계·연구계 등 전문가의
의견
5. 그 밖에 지정요청 기술과 관

<신 설>

런된 참고자료

제12조의4(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원 범위 및 내용) ① 정부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유망 생명공학기술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개발 완료 후 사업화 추진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 지원
2. 기술개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, 실증 및 인허가 지원
3. 공공부문에서 유망 기술의 초기시장 안착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
4.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, 기술평가, 기술거래 지원
5.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확산활동 및 대국민 홍보 지원
6. 기타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성공적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

<신 설>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련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의5(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)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16조의 학계·연구기관·의료기관·산업계 등 다양한 혁신주체는 진보된 기술의 출현,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보편화와 같은 기술환경의 변화 등 기존의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

<신 설>

게 제출해야 한다.

1. 해당 유망 생명공학기술의
범위와 내용

2. 변경 또는 해제 요청의 이유

3. 그 밖에 유망 생명공학기술
의 변경 또는 해제 요청에 관
한 참고자료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
에는 관련 전문가 협의를 통해
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11
조의2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
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
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
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
되는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
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12조의6(국제협력의 추진) 법
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
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생명공학에 관한 국가 간 규
제조화 및 국제인증 지원

2. 생명공학 관련 데이터에 관
한 교류 및 표준화, 상호운용
성을 위한 협력

<신 설>

제13조(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)
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법 제15조제7호에 따른 생명공
 학 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 및
 판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
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중앙
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
 서 자금의 지원과 제품의 우선

3. 기술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
를 위한 국제 전시회 및 학술
회의 개최

4. 그 밖에 생명공학 수준 향상
과 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
인정되는 사업

제12조의7(전문인력 양성에 대한
 지원) 법 제18조제3항제4호에서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
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생명공학 연구개발 및 생산
공정의 자동화와 품질관리 등
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

2. 의학적 전문지식과 생명공학
을 융합한 전문인력 양성

3.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
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하다고
인정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

제13조(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)

①-----
법 제15조제1항제7호-----

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의2(사업화 촉진에 대한 지원) 법 제15조제2항제3호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예비창업자의 발굴·육성
2.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또는 판로 개척 지원
3.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
4.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
5. 외국인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 전문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
6. 기타 생명공학 관련 사업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5조의5(표준화 사업 추진 등)

①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생명공학기술 국가표준을 위한 표준 수요조사

제24조(업무의 위탁) ① 과학기술
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
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
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
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법 제24
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생명
공학정책전문기관(이하 “정책
센터”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
다.

1. · 2. (생 략)

<신 설>

2. 표준화 전략 수립 및 국제 표
준화기구 대응, 협력

3. 생명공학기술 표준화를 위한
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
전문인력과의 교류·협력

4. 생명공학기술 관련 국제표준
의 동향 조사·분석 및 대응체
계의 구축

② 정부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
따라 표준화에 관한 시책을 추
진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
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때 필요
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
원할 수 있다.

제24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

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2의2.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
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

3. ~ 5. (생략) ② (생략)	<u>등</u>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	
연 락 처	(044) 202 - 4553